「소방시설공사업법 질의회신집」

2019.10.

* 2018.01. ~ 2019.07 질의회신 내용 중 발췌

본「소방시설공사업법」질의회신집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그 회신사항은 법령 개정 또는

개별 사실관계의 차이 등에 기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 차

_	노방시설공사업법	1
	제2조(정의)	· 1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3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8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 8
	제11조(설계)	. 9
	제12조(시공)	10
	제13조(착공신고)	12
	제14조(완공검사)	18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20
	제16조(감리)	21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24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26
	제21조(공사의 도급)	28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34
	제22조(하도급 제한)	34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7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38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38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	39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40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42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43

소방시설공	사업법 시행령	45
제2조(소방시	·l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45
제3조(소방기	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58
제4조(소방시	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62
제6조(하자보	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71
제9조(소방공	당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73
제10조(공사 ²	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79
제11조(소방-	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81
소방시설공	사업법 시행규칙	84
	사업법 시행규칙 설업의 등록신청)	
제2조(소방시		84
제2조(소방시 제8조(소방시	설업의 등록신청)	84 84
제2조(소방시 제8조(소방시 제9조(소방시	설업의 등록신청) 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84 84 85
제2조(소방시 제8조(소방시 제9조(소방시 제12조(착공/	시설업의 등록신청) 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84 84 85
제2조(소방시 제8조(소방시 제9조(소방시 제12조(착공· 제16조(감리·	설업의 등록신청) 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신고 등)	84 84 85 85
제2조(소방시 제8조(소방시 제9조(소방시 제12조(착공/ 제16조(감리· 제17조(감리·	설업의 등록신청) 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설업의 행정처분기준) 신고 등) 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84 85 85 87

소방시설공사업법

[법 제2조] 감리원 배치없이 시공을 진행하였을 때에 대한 질의(2019.05.)

질 의 시공사가 공사일보 등 허위작성 및 소방공사감리원의 근무요청없이 야 간. 주말에 임의적 시공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서 "소방공사감리업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제1항에서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소방감리원 없이 소방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소방시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및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방시설공사가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으로 관계인에게 알리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거나, 공사업자에

[법 제2조] 지점에 소방시설업등록 시 기술자 선임에 대한 질의(2019.03.)

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질 의 동일 법인등록번호 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본점(부산), 지점 (서울)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지점에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소방기술자는 본점과 지점 중 어디로 등재되어야 하나

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소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제1항에서 "자본금,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조(정의)제1항제4호에서 "소방기술자란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 시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의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시면 되며, 별도로 소재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본점(부산), 지점(서울) 어디에 등록하여도 관계는 없으며, 소방기술 자는 소방시설업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므로 등록된 전문소방시설공사 업에 등록하시면 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조]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소방시설 이설, 추가 시에 소방시설공사업 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2018.08.)

질 의

인테리어공사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 이설, 추가 및 감지기 이설,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여야 하는지, 현재는 인테리어공사 시 소방시설공사의 변경을 인테리어업자들이 대부분 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영업인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1호 나목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업" 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2. 비고 6 내지 8에 의거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 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2. 비고 1.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영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영업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시공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유도등 이설 등은 소방시설의 이전 및 정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공사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과 착공신고 대상인 시설을 함께 시공 시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2019.06.)

질 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비상조명등설비를 옥내소화전 설비등과 함께 시 공하는 경우 비상조명등 설비도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 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착공신고 대상여부를 정하기 위한 규 정으로 제4조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 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되어 그 대상물에 설치되는 모든 소방시설에 대 하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소액공사 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에 대한 질의 (2019.06.)

- 질 의 보수공사의 금액이 100~500만원 사이일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체에게 보수를 맡길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는 소방시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에관계없이 소방시설 공사등을 소방시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에 의뢰한다면 관계인은 도급 위반에 해당되며,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업체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해당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및 제36조 위반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방염업 추가 등록에 대한 질의(2019.04.)

질 의 거창군에서 방염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 운영 중 입니다. 방염업을 인근(함양 또는 합천)에 추가로 등록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만 갖추면, 함양 또는 합천 부근에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내시어 방염처리업을 등록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거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표자가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전기공사업체에서 비상조명등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2019.04.)

- 질 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종류로써 비상 조명등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전기공사업체에 서 비상조명등 공사를 할 수 있는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상조명등은 전기분야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전기공사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을 설치(공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 단계의 전기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전기분야 소방시설 공사를 공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한 질의(2019.03.)

- 질 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 력을 보유하여야한다"에 대한 조문 해석 및 같은 항 각 호 요건을 갖춘 경우 외 설계 인력을 보유하더라도 자체설계는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제4항에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감지기 증설을 위한 설계 시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에 대한 질의 [2019.03.]

- **질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아날로그 감지기 증설 시 감지기 증설을 위한 설계 를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등록된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설계하여야 합니다.(소방청 소 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비상조명등설비 공사 시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2019.03.)

- **질 의** 신축현장에서 비상조명등설비 공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가능한지
-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착공신고 대상여부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4조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

상물은 착공신고 대상이 되어 그 대상물에 설치되는 모든 소방시설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전기공사업체가 비상조명등설비 시공에 대한 질의(2019.03.)

질 의 전기공사업체가 비상조명등설비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지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비상조명등은 전기분야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공사 업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하여야 합니다.(소 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소방시설 배관누수에 따른 공사방법에 대한 질의(2018.09.)

질 의 소방배관 누수가 의심되어 누수탐지 후 누수부분에 대해 보수하려 할 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한 업체에서 누수탐지,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2. 비고 1.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영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이전 및 정비를 영업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배관에 대한 누수탐지작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정비의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즉, 소방

시설배관 누수에 따른 누수탐지는 누수탐지전문업체에서 실행하고, 소 방시설 배관의 보수작업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소 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지점에 기술인력을 두고 본점에 소방시설업 등록 가능에 대한 질의 (2018.08.)

- 질 의 본점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소방기술자를 지점으로 하여 4대보험 가입 시 해당 소방기술자를 본점으로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소방시설업의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업자(지점 포함)로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고 해당 면허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4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등록사항의 배제에 대한 질의 (2018.05.)

- **질 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라 기술인력의 등록을 배제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령에 적용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소방시설업 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술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이 변경되는 시점은 자격정지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7조] 지위승계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업체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 (2018.05.)

실 의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대표자, 기술인력, 업등록번호 등은 변경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지위승계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대표자, 소재지, 소방기술자의 변경사항 없이법인사업자로 지위승계한 경우 별도로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8조] 감리업 등록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2019.07.)

-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을 운영 중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변경을 하였을 경우 현재 감리 진행 중인 현장마다 감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제3항에서 "소방시설업 자는 폐업한 경우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7조제2항에서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이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은 폐업이 되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은 신규등록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이 미계업 되었고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이 신규등록 된 사실을 관계인(건축주)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이후 공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2019.04.)

- 실 의 소방시설공사업 폐업을 하였으나, 도급자와 계약이 유효하고 선임되었던 소방기술자가 계속해서 책임시공을 하였을 때 계속하여 소방시설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그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계없이 소방시설공사업의 반납(폐업)은 그 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 할 수 없어 소방공사를 계속 진행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의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1조] 성능위주설계 자격범위에 대한 질의(2019.05.)

- 절 의 성능위주설계를 발주처가 성능위주설계업체(A업체)와 전문소방시설설계업체(B업체)에게 공동 도급하는 경우 자격이 적법한 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제3항에서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별표1의2]에서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위주설계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계는 상기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에서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 할 경우에도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체 모두 상기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1조] 감리원 배치에 대한 질의(2018.04.)

질 의 중급 감리원 배치 적용 현장에 상위 기준인 책임감리원(고급이상)과 보조감리원(초급이상)을 배치 가능한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상위 감리원으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2조]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한 질의(2019.05.)

회

질 의 기존 전기실 CO²소화설비를 청청소화설비로 전체 교체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 설계도서만 포함(건축도면 제외)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착공신고 등)제1항에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동의요구)제2항에서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설계도서(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 창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대상은 건축허가 없이 착공신고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출된 설계도서가 없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도서(건축물의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 창호도)를 첨부하여 착공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2조]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 후 현장이탈에 따른 처분에 대한 질의 (2018.05.)

질 의 한명의 소방기술자가 다수의 현장 및 지역에 배치된 후 현장점검시 해당 공사현장에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고처분 등이 내려진다면 1명의 기술자가 1개의 현장에만 배치하도록 관계 법령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는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 현장"이란 소방 시설에 대한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하므로 그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위치를 의미하고, "배치"란 사람을 일정한 자리에 알 맞게 두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기술자는 착공신고 접수일부터 완공검 사일까지의 현장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명의 소방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동시에 배치는 가능하나, 당해 현장에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소방기술자가 현장에서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고, 당해 현장에 공사가 진행되는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다른 현장으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2조] 소방기술자 퇴사에 따른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2018.02.)

- 질 의 현장 소방기술자가 17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새로운 소방기술자가 18년 1월 2일에 변경되었을 경우 18년 1월 1일은 소방기술자가 미배치되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단, 18년 1월1일은 공사가진행되지 않았음)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제2항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여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술자가 2017년 12월 31에 퇴사하였고 2018년 1월 1일에 소방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위법사항 없이 2018년 1월 2일에 소방기술자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2조] 소방시설공사 현장대리인 변경기간에 대한 질의(2018.01.)

실 의 소방기술자 현장대리인이 11월 30일 퇴사하면, 12월 1일자로 바로 기술자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30일 이내에 기술자를 선임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별표 2 비고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소속 소방기술자가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기술자가 해임되고 배치되기 전까지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된다면 소방기술자 미배치 위반사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등)에 따라 착공신고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12월 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2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2018.01.)

질 의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방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 현장"이란 소방 시설에 대한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하므로 그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위치를 의미하고, "배치"란 사람을 일정한 자리에 알 맞게 두는 것을 말하므로, 소방기술자는 착공신고 접수일부터 완공검 사일까지의 현장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 고 있는 동안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소방시설변경에 따른 착공변경신고에 대한 질의(2019.07.)

질 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옥내소화전 배관과 SP설비의 펌프, 배관을 전용으로 설계하였다가 시공 시 겸용으로 하여 펌프(대수 감소), 배관을 시공하 는 경우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변경하는 각각의 경우 착공변경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공사업자는 중요한 사항(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중요한 사항 중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 규정되어 있는 각각의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전단의 질의사항은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되는 않아 착공변경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후단의 질의사항은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소화장치)가 변경된 것으로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가설건축물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2019.07.)

기설건축물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자진설비로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엔 착공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공신고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견본주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 제3호 문화 및 집회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 에 해당되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터널공사의 착공신고 지역에 대한 질의(2019.06.)

질 의 도로 터널의 총 1km 구간 중 800m는 양산시 관할, 나머지 200m와 터널 관리사무소는 울주군 관할일 경우 어느 관할지역으로 착공신고를 하여 야 하는지 여부

[법 제13조] 무면허업자가 비상방송, 비상조명, 비상콘센트설비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2019.05.)

- 질 의 소방시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 정보통신업자가 비상방송, 비상 조명, 비상콘센트설비를 시공 시 전기 및 정보통신감리업자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발주자 처벌사항이 있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감리업무를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감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는 소방공사감리 업자가 감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도급계약의 위반사항이라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하나의 건축허가에 2개동 이상 일 경우 착공신고 시 연면적 표기 방법에 대한 질의(2019.05.)

- **질 의** 하나의 건축허가에 주건물(15,000㎡)과 부속건물 2개동(15㎡)의 허가 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시 연면적은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준점은 연면적의 합계가 아닌, 각각의 연면적 중 가장 큰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대상에 연면적을 표기할 때에는 각각의 연면적을 표기(예시 : 1동-15,000㎡, 2동-15㎡)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질의(2019.05.)

질 의 원도급사는 무선통신공사 시공, 기계분야는 A업체, 전기분야는 B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할 때, 원도급사는 전기분야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자재만을 공급하고 B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경우 하도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에서 "공사업자의 착공신고 및 착공변경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하도급의 제한)에서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하도급 제한 단서 조항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원도급자도 하나 이상의 소방시설을 공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귀하께서질의하신 무선통신보조설비를 하도급자가 설치하는 행위는 원도급자가일괄 하도급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위반사항이라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착공변경신고 시점에 대한 질의(2019.05.)

- 질 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4월 1일 동의신청을 하였고, 5월 22일 동의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착공변경신고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착공신고 등)제2항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한 사항의 경우 변경일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허가하여 승인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할 시에서 기숙사동에대한 설계변경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대표이사 변경시 착공변경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2018.04.)

질 의 대표이사 변경이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① 시공자 ②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변경신고를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회사의 단순한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은 시공자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착공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병 등으로 인한 법인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위반행위 차수적용에 대한 질의[2018.02.]

- 질 의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법 제13조제1항)으로 1차 경고처분 후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 위반(법 제13조제2항)으로 적발된 경우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차수적용 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지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위반행위"란 제2호 개별기준에서 말하는 위반사항 각각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과 제13조제2항 위반은 착공신고 위반, 착공변경신고 위반은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지위승계에 따른 착공변경신고 기준일에 대한 질의(2018.02.)

실 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지위승계(분할합병) 시 착공변경신고 기준일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로 하는지, 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된 날로 해야 하는 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① 시공자 ②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 자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 합병으로 지위승계된 경우 착공변경신고 기준일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의 발급날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방화셔터에 따른 수신기 설치 시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에 대한 질의(2018.01.)

- 일 의 방화셔터 공사를 하면서 방화셔터 전용수신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때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는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기존수신반에 연동하는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방화셔터 전용수신기를 설치하는 것도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3조] 착공신고 및 기술자배치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2018.01.)

- **질** 의 30일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기간동안 소방기술자 현장배 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변경착 공신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 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에 해당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시공)제2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미 배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제9 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최

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만 횟수 증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4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신청)자에 대한 질의(2019.06.)

질 의 소방공사자(감리자)와의 계약상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건축주가 소방 시설공사 완공검사 증명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에 대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신청한 공사업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별도로 민원 신청인이 아닌(건축주 등)자에게도 발급 할 수 있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4조] 부분완공검사 후 소방기술자, 감리원 배치 기준에 대한 질의(2019.05.)

- 질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고, 부분완공증명서를 발급 될 때 완공되지 않은 부분의 감리 및 착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 방기술자와 감리원을 철수해도 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제2항에서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완공검사는 부분적으로 사용할필요가 있어 신청한 사항으로 그 특정소방대상물은 완공이 되지않아소방기술자 및 소방감리원은 최종 완공검사 및 감리결과보서를 제출하여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까지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4조] 소방완공증명서 발급 후 사용승인 면적이 증가된 경우 준공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2018.08.)

질 의 소방완공증명서를 받고, 건축사에서 사용승인 면적 계산하였더니, 30 ㎡가 증가되었고, 경미한 면적증가에 따라 별도의 소방시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준공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을 받았으나 사용승인면적이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하신(시·군·구청)에서 면적변경에 따른 주요변경내용 및 관련도면 등을 첨부하여 관할소방서에 "사용승인 예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인한 협의"공문을 통보해 주면, 관할 소방서에서는 주요변경내용 및 관련도면 등을 검토한 후 시·군·구청에 이상유무를 통보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처리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4조] 부분완공검사신청에 대한 질의(2018.02.)

질 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층 또는 동으로 분할하여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제2항에서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제2항 "소방시설 완공검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이라 함은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층 또는 동을 말하고, 전체공사 중 부분적으로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등이 현장 확인 결과 소방시설공사가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부분 완공할 수 있다고판단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 소방서에 질의

또는 현장확인 요청 하시어 부분사용승인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5조] 하자보수 보증기간 시작 시점에 대한 질의(2019.04.)

질 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시작 시점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 기간"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의 시작시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하자보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결과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한 후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업무가 마무리되는 사항으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5조] 하도급 계약관련 소방시설 하자보수 이행업체에 대한 질의(2018.09.)

- 질 의 A업체(도급업체)가 B, C업체(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아파트의 소방시설 시공을 하였을 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어떤 업체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결과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책임은 실제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급업체(A)와 하도급업체(B,C)간 하자 보수에 대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 소방산업 과 044-205-7508)

[법 제15조] 하자보수를 지연하는 소방업체 처벌에 대한 질의(2018.03.)

- 질 의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하자가 발생, 하자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에 그 사실을 알려, 하자처리가 잘 이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6조] 소방감리원 업무사항 및 대리업무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2018.11.)

- 질 의 콘크리트 타설 전 매립배관을 검측함에 있어 반드시 소방감리원의 검 측이 필요한지, 해당 업무를 상주전기감리원에게 대리업무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 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소방감리원이 검측하여야 하며, 전기감리원에 게 업무협조는 가능하나 소방감리원의 대리업무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6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범위에 대한 질의(2018.08.)

질 의 소방공사감리원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에 따라 모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현행 건축관련 규정상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고, 자재승인 / 자재검수 / 설치 후 검측은 건축감리가 시행하니 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의 모든 내용을 소방감리자의 업무로 보기 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관련이 있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제연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어반실 등) 작동과 연계된 등 소방시설법에 의한 확인할 의무는 하며, 설치공사는 건축시공사가 시행하는 등 모든 행위가 건축관계법규에 의해 진행되는 건축분야 감리자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성능인정여부및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성적서 등을 확인하여적법 설치여부를 검토하시되, 건축관계자(감리 등)의 자문 또는 확인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6조] 방화구획(방화셔터, 방화문 등)관통부에 대한 감리주체에 대한 질의(2018.04.)

질 의 방화구획 관통부(방화문, 방화셔터 등)에 대한 감리는 소방감리가 하여야 하는지

회 신 소방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 소방공사의 감리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방화구획"은 건축감리 업무에 해당하고 소방감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방화문 및 방화셔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해당되어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6조] 가설 임시전기와 수도로 성능테스트 후 감리결과보고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2018.03.)

- 질 의 감리 완공 시 가설 임시전기와 수도로 성능테스트 후 결과보고가 가능 한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소방공사 감리업무에서 제1항제5호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공사감리업무에서 화재안전기준(수원, 전원)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설전기·수도는 감리완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6조] 설계변경 절차에 대한 질의(2018.01.)

- **질 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 중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 우 어떤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의 적합성 검토 후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6조] 상주감리원 사무실에 대한 질의(2018.01.)

질 의 현장이 협소하여 현장 내부에 소방감리 사무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 현장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소방감리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성주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에 따라 현장에서 감리업무의 적합한 수행이 가능하다면 현장 여건에 따라 소방감리 사무실을 현장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7조] 1개 공사현장에 2개사의 감리업체를 지정신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2019.06.)

- 질 의 소방공사 품질시공 유도를 위해 1개의 공사현장에 2개사의 감리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소방공사감리자의 대한 공사로 하는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개동에 대한 공사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1개의 감리업체로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7조] 감리자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2019.06.)

- **질 의**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를 타공종에서 시공할 경우 타공종의 전 문업체에서 시공하더라도 소방감리원에게 별도의 승인 및 확인을 받아 야 하는지 여부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은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설치되는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소방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타 공사업자가 공사만 할뿐 소방공 사감리업자는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7조] 소방공사와 겸용되는 설비의 경우 감리업무에 대한 질의 (2019.05.)

질 의 대표자의 추가, 대표자의 변경, 주소 변경, 상호 변경되는 경우 감리 자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2항에서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변경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사항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 감리 결과 통보 시 제출하시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공사감리업체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7조]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에 대한 질의(2018.04.)

질 의 해당 현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라 소방감리원 지정신고 및 감리 배치신고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조감리원 2명을 더 배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제1항은 그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 2. 에 따르면

- 1.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보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8조] 휴일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배치 유무에 대한 질의 (2019.04.)

실 의 상주공사현장에서 주말 및 휴일 소방작업 시 공사감리원이 상주해야 할 것인지 책임, 보조감리원이 선임되어 있을 시 모든 감리원이 상주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소방기술자 배치 관련하여 도급업체와 하도 급업체에서 소방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배치기준은 소방시설용 배관을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일의 근무시간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나, 평일의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도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되어 있는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시면 되며, 휴일에 소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리원 배치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급업체 소방기술자 배치 관련 사항은 착공신고 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각기 본인이 시공하는 소방시설을 구분하여 신고하였을 것으로 본인에 해당되는 소방시설 공사가 있을 시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8조] 소방공사감리원이 미배치 행정처분 에 대한 질의(2018.11.)

질 의 소방공사감리원 미배치 사항은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호 신 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18조제1항 규정 위반입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8조] 공동,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대한 질의 (2018.04.)

질 의 A사와 B사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할 때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맞게 소 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된 공사감리자(A사, B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의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 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된 전기분야 공사감리자(A사)와 기계분야 공사 감리자(B사)는 해당 분야의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18조] 보조감리원 배치에 대한 질의(2018.02.)

신

회

- 질 의 보조감리원을 A로 선임하고, 보조감리원 B가 타현장 감리 종료 후 감 리원변경을 하려고 할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감리원 배치통보 등)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감리원으로 A을 선임하고, B로 변경시 배치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설계, 시공 일괄발주 방식의 소방 설계 용역 계약에 대한 질의 (2019.06.)

실계-시공일괄 발주(Design-Build 계약) 방식의 경우, 발주자와 소방 시설설계업자가 바로 계약하지 않고, 시공사(Design-Builder)와 소방 시설설계업자 간 계약으로 가능한지 여부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의 도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업자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공사업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참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적법하게등록된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업체에게 소방시설을 설계 및 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에 등록된 업체에 도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고 있으며, 설계시공 일괄 도급을받은 시공사는 도급자로서 관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방염처리업의 도급에 대한 질의(2019.06.)

회

신

- **질 의** 소방시설공사 중 방염처리업은 후처리방염, 선처리방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직접 도급하도록 함으로서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도급을 받아 다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을 하는 폐단을 막고자 개정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방염에 관련

된 도급사항도 후처리·선처리방염과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방염처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소규모 설계 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해야하는 지에 대한 질의(2019.06.)

- 질 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 설계에 대하여 소방설계업 자에게 별도로 분리발주하여 도급해야하는지, 소방설계 업자가 아닌 건축사가 도급해도 되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설계업 영업범위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어 소방시설을 분리발주 할 의무는 없으나, 상기 규정과 같이 소방시설설계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체에 도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8)

[법 제21조] 다가구 주택 신축 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해야하는 지에 대한 질의(2019.05.)

- **질** 의 연면적 800㎡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려합니다. 종합건설회사에 견적 의 뢰하였더니 전기, 설비, 소방은 건축주가 별도 분리발주 하려야 한다 고 하는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해야 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분리발주를 해야 함은 아니나,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에 등록된 소방시

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종합건설회사가 소방시설업에 등록되어 있다면 종합건설회사에 도급이 가능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감리 하도급에 대한 질의(2019.05.)

질 의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하도급의 제한)에서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제한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만 제한하는 것으로 소방공사감리는 하도급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공사감리에 대하여는 하도급 가능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소방시설설계 도급에 대한 질의[2019.04.]

질 의 시공사(소방시설설계업 미보유)와 소방설계사의 공동도급 형태로 계약 이 가능한 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등이란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말합니다. 상기규정은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한

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사(소방시설설계업 미보

유)와 소방시설설계업자와 공동으로 도급하는 경우도 시공사가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가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에 대한 질의(2018.08.)

- 일 의 발주자(A)와 소방시설업자(B) 간에 소방 감리 및 설계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금만 소방시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는 제3자(C)를 통하여 발주자(A)와 소방시설업자(B) 간에 계약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의 도급에 위배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소방 시설공사 도급금액의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A)와 소방시설업 자(B)간의 도급계약을 하였다면 제3자(C)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질의(2018.05.)

- 질 의 당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음)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검토 중 의료기기 설치 장소에 대한소방공사 계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당 업체는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설계업,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방염업자에게 도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인의 정의는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5호에 같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병원)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만 도급이 가능하며, 질의하신 귀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건설업체가 공사수주 시 하도급, 소방기술자배치에 대한 질의(2018.04.)

- 질 의 건설사(A업체)가 모든 공사를 수주하여 소방공사를 전문소방시설공사 업자(B업체)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 지, 또한 하도급 하는 경우 A, B 두 업체 모두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하는지 여부
- 제21조(공사의 도급)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업체(건축공사업 면허)가 소방시설공사업 면 허가 없을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을 수가 없으며, B업체(전 문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 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가능하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 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 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자가 제연설비를 도급하여 하도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2018.03.)

일 의 발주자가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에게 제연설비를 포함 모든 소방시설설계를 도급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영업범위를 초월한 제연설비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최종적으론 영업범위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계업자(건축사사무소)에게 도급하였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공 사의 도급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건축사사무소 소방시설설계 도급에 대한 질의(2018.02.)

- 질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건축설계와 소방시설설계를 건축사사무소에서 도급하고 건축사사무소는 소방시설설계를 소방시설 설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만 도급이 가능하며, 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없는 설계자에게 도급은 불가하고, 제21조(공사의 도급)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질의(2018.01.)

- 질 의 종합건축사가 민간공사를 일괄수주하여 공사진행 시 소방설비 공사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직접 하도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 제21조(공사의 도급)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 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 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로부터 일괄수주 한 종합 건축회사에 소방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소공사의 도급 위반에 해당되고 시행사에서 직접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소방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소 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1조의3]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가 물품 등을 구입,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2019.06.)

- 질 의 원도급사(A업체)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시공을 하고, 하도급사(B업체)가 나머지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 A업체가 B업체 공사의 물품을 구입, 지급하는 경우 위법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제3항에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소방시설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2조] 원도급자가 기계, 전기분야로 각각 1회씩 분리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2019.05.)

- 질 의 종합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아, 소방기계와 소 방전기를 따로 구분하여 각각 두 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것은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지 여부
-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단서 조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2조] 소방시설설계의 하도급에 대한 질의(2019.05.)

- 일 의 발주자가 소방시설설계를 소방시설설계업체와 계약하였을 시 소방시설 설계를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에서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 받은 소방시설 설계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 소방시설공사등(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므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2조]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질의(2018.09.)

- **질 의**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무등록, 무자격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 대한 위법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 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6조(벌칙)규정에 따라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소 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2조] 자진설비도 하도급 제한에 적용되는 지에 대한 질의(2018.07.)

질 의 자진하여 시공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호텔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자진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며, 소방시설공사(자진포함)의 도급은 하도급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8)

[법 제22조]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원도급사의 시공 범위에 대한 질의(2018.07.)

- 질 의 신축공사에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에서 원 도급사가 소화기구와 공기안전매트만 설치하고 나머지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의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말하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화기구, 공기안전매트만 설치하고 나머지 소방시설에 대하여 하도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2조] 소방시설공사의 재하도급에 대한 질의(2018.05.)

질 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는 재하도급 가능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방시설공사도 재하도급 가능, 또한 법령 개정은 고려되고 있는 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에서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한다는 규정으로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에 하도로 인하여 공사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소방공사의 품질의 저하로 인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예외적으로 재하도급 할 수 있는 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2018.03.]

질 의 소방면허가 있는 건설사가 도급하여 소방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처분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8)

[법 제22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대한 질의(2018.03.)

준을 해야하는 지 여부

질 의 도급업체에서 소방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전기공사업체와 소방전기업공 사업체가 동일 업체이어서 하도급계약을 두 공사를 합쳐서 한 업체와 하고 그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나 소방전기업체의 계약금액만을 분리하여 계산하면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어떠한 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적정성 심사 기준의 하

도급계약금액은 소방공사 내역을 별도로 분리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 업과 044-205-7508)

[법 제22조의3] 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의 (2019.05.)

- 질 의 소방시설공사를 계약한 경우 전자서명에 따라 계약하고,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는데 소방시설업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서 도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소방청 고시)는 소방시설업 계약 당사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고시한 것으로, 반드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급계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6조] 시공능력평가금액과 공사입찰에 대한 질의(2019.03.)

일 의 입찰공고 상 시공능력평가액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자신의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한 건의 계약을 낙찰받아 계약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서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목적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 발주자와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별도의 제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6조] 선급금 기성실적에 대한 질의(2018.02.)

- **질** 기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해 기성실적에 포함하여 실적신고 할 시 기성실적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수령 당시 기성실적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공사완료 후 선급금에 대한 기성실적은 당해 년도에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6조의2]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에 대한 질의(2019.06.)

- **질 의** 설계, 감리용역이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 되는 금액인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제2조(기준금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부과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7조] 소방기술자 이중취업에 대한 질의(2019.06.)

질 의 공사현장의 특성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도급사인 A업체에 작성하고, 실제 현장 대리인은 원도급사인 B업체로(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에서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A업체와 작성하고, 실질적인 현장 업무 및 4대보험 가입은 B업체에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상기규정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이중취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7조] 아르바이트 등이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2019.05.)

- 실 의 소방기술자가 퇴근 후 저녁, 주말 아르바이트(4대보험 가입)를 할 경우, 비주거 임대업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조경사업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어 주말 또는 근무시간에 일할 목적인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에서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취업 금지규정은 소방시설업체에 근무시간 중 성실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으며, 단서규정(①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이어야 하고, ②근무시간 외일 것을 요하며, ③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단서 조항에 해당되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근무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근로자 일과시간 09:00~18:00) 외의 경우라는 입증은 필요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7조] 대표이사 이중취업에 대한 질의(2018.04.)

회

질 의 A법인(관리업, 공사업 겸업)의 대표자, B법인(관리업, 공사업 겸업)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으로 동시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에서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취업 금지규정은 소방시설업체에 근무시간 중 성실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방기술자격을 가지고개인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부등록이 있는 모든 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이중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따라이중취업금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①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이어야 하고,②근무시간 외일 것을 요하며, ③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A법인(관리업, 공사업)의 대표이사가 B법인(관리업, 공사업)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제27조] 공사감리원 일용직 업무 겸직에 대한 질의(2019.03.)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질 의 현장 투입전까지 본사 출근, 현장 근무 하지 않을 경우 감리업무와 관계없는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일용직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에서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본사출근 및 현장투입 없이 자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소방시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이라면 소방기술자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택근무자도 출근을 하지 않을 뿐 자택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어, 단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근로자 일과시간 09:00~18:00) 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7조] 소방기술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2018.02.)

질 의 중급 소방기술자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데, 신축현장에 소방기술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에서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소방기술자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시는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8조] 소방기술자 자격 요건의 시점에 대한 질의(2019.06.)

- 질 의 경력변경신고를 할 시 등급 변경시점이 19년 2월 10일이나, 변경신고를 19년 4월 10일에 하여 등급을 부여 받았을 때 어느 일자로 등급 변경 시점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역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제4조 제2항에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 구분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와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경력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자격·경력 변경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신청서 및 서류 등이 자격 또는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자격·경력 수첩이 발급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등급 변경 시점은 수첩을 발급받은 날이라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8조] 소방제조업 근무경력 인정에 대한 질의(2018.08.)

질 의 소방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소방제조업에 근무하였을 때 소방기술경력 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4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면 소방기술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련업"이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을 말하며, 소방관련업에서의 경력에 한하여 경력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소방관련업무 종사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8조]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취소에 따라 자격증 취소 가능여부 대한 질의(2018.02.)

- 질 의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이 취소되는 경우에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도 취소 되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이 취소되는 경우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은 취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9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대한 질의(2019.06.)

- **질 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경우 2년에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사항은
-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제1항에서 "화재 예

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술자가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그 소방기술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그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또는행정처분은 없으나,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 또는행정처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법 제29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시기에 대한 질의(2018.05.)

- **질 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이수 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 마다 1회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자는 실무교 육 기산일은 최근 소방기술자로 선임된 날짜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영 제2조] 소방시설의 범위에 대한 질의(2019.06.)

실 의 소방기계장치(펌프, 팬 모터 등)와 전력공급장치(MCC)사이의 배관, 배선, 결선공사는 소방시설공사분야 기계, 전기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1] 제1호 비고1, 제2호 비고1, 제3호 비고1 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대한 소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분야의 업무범위에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로 기계분야 업무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 무등록업체의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한 질의 (2019.05.)

질 의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일반 세대 내에 화재감지기 (차동식, 정온식, 광전식)을 설치 가능한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 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 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 치는 소방시설을 공사·정비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업에 등록된 소방시설 공사업체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소방시설 전기와 기계를 한 업체에서 시공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2019.05.)

실 의 소방전기와 소방기계를 시공하는 한 현장에서 한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함께 시공할 수 있는지 이때 소방기술자 배치는 소방전기와 기계 자격 을 모두 가진 1명으로 배치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업종별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분야)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공사가 가능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은 기계분야 소방시설의의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은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한 공사현장에 기계,전기 공사를 함께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별표2]에서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 비고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분야별(기계,전기)로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고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위치변경 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해 아하는 지에 대한 질의(2019.05.)

실 의 사무실 내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2~3개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 시설공사업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하는 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는 소방시설에 대한 이전으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로 면제되는 공사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2019.05.)

- 질 의 공동주택 현장으로 10년 2월에 사업승인이 완료 되었으며, 착공시점은 19년 6월 경으로 예상되는 바,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사업승인이 완료된 10년 2월 기준으로 적용하여 배치해도 되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칙<제26031호, 2015.1.6.> 제2조(소방기술 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상은 2019년에 착공신고를 하는 대상으로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별표2]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기준부분과 방화구획하여 증축 시 설계업 영업범위에 대한 질의 (2019.04.)

- **질 의** 기존 공장이 15,000㎡이고 기존부분과 방화구획하여 2,000㎡를 증축 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체가 설계 가능한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설계업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영업범위를 정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부분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단서에 해당될 것으로 증축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소방시설설계업 영업범위 적용이가능하여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소방배관 공사를 소방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2019.04.)

질 의 노후화된 소방배관 교체 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는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배관 공사도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공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가스누설경보기 공사의 주체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가스보일러 내부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는 전기분야로 신고해야하는 지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해야하는지 여부
-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의 범위에서 가스누설경보기는 전기분야로 규정하고 있어 가스누설경보기는 전기분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도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의 주인력 선임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동일 법인에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의 주인력으로 동시 선임이 가능한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 비고 제5호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은 소방 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에 동시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열선공사의 주체에 대한 잘의[2019.04.]

질 의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배관 열선공사는 어느 업종에서 수행해야하나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소방시설의 범위에서 옥내소화전화전설비는 기계분야로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옥내소화전설비의 열선공사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에서 시공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8)

[영 제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수 및 충수작업 시 소방시설업의 영업범위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배설비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배관내 소화수의 배수 및 충수작업을 할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가 작업 해야 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내의 배수 및 충수작업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정비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8)

[영 제2조]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이 감지기 교체, 감지기 증설, 유도등 점등 불량 경미한 사항의 업무 수행 가능한지 여부 대한 질의(2019.04.)

질 의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소화기 교체, 감지기 교체, 감지기 증설(회로 증설 제외), 유도등 점등불량 교체 등이런 경미한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업 보조인력 등록자가 아닌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할 수 있는 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 및 영업범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9]에서 소방시설관리업의 정의(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업) 및 기술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업종별로 각각의업무을 정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 되어 있는 기술인력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하는 경우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의 관리·감독하에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의 관리·감독하에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의 관리·감독하에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이 공사하는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각 분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기술자의 경우 감리업무 동시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감리원이 각 분야(건축, 전기, 통신, 소방)의 자격을 동시 보유하고 있다면, 감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기술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 (기술능력의 겸직허용) 제2항에서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인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방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은 상기규정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 신고하여 소방업무를 하도록 한 사항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업종을 겸업하는 때 기술인력에 대하여 겸임·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철판업체에서 옥내소화전함 시공 가능에 대한 질의[2019.03.]

질 의 신축중인 아파트 복도의 PD(Pipe Duct)의 전면 마감은 철판으로 시공이 됩니다.

철판업체가 소화전함(KFI인증자재)을 받아 전면 철판에 고정을 하고 내부 배관 등은 소방전문업체가 시공하여도 되는 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 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 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는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를 말하며, 벽면 전면에 설치하는 철판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철판업체에서 시공이 가능하나 옥내소화전함을 포함하여 옥내소화전설 비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공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소방시설설계업과 전기설계업의 기술인력 겸직에 대한 질의 (2018.08.)

- 질 의 전기설계업 기술인력 1인을 소방시설설계업 보조인력으로 겸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르면 "소방시설별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계업으로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 록하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의 주된 기술인력에 한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설계업 기술인력 1인을 소방설계업의 보조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에 대한 질의(2018.06.)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가 연면적 1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배관 공사 시 소방배관시설만의 연면적을 말하는건지, 소방배관시 설과 연관된 관련 시설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 1]에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 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의 공사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전체의 연면적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일반조명설비와 겸용되는 비상조명등설비에 대한 시공 주체에 대한 질의(2018.07.)

- 일반조명설비와 비상조명등설비가 겸용되어 정전 및 화재 시 비상발전 기를 통해 작동하도록 시공하는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공사 업자가 시공 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비상조명등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소방 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 비고 1. 나. 1)에서 소방시 설업자의 영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다른 업종 공사업자가 공 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으며,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영업범위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일반소방감리원의 중복현장 가능 범위에 대한 질의(2018.04.)

질 의

전기감리원 자격과 소방공사감리원 자격을 동시 보유하고 있는 자가 A 아파트 현장과 전기분야 비상주감리대상인 B아파트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제1항에서 "소방 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 력은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제2항에서는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 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 1] 제3호 비 고 4에서 "기술인력의 완화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 술인력의 완화기준을 살펴보면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전단 생략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 이하 생략"을 함께 하려는 경우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 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원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 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기술인력의 완화기준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 등록되어진 기술인력에 한하여 소방 감리원과 전기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소방 감리원은 배 치되어진 공사현장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적법하게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 사업 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소방공사감 리업과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의 기술인력 겸임이 가능하며, 이 외는 겸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변경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질의(2018.04.)

질 의 소방공사감리업체가 주인력 해임에 따라 전문소방공사업에서 일반소방 공사감리업으로 업종변경 시 기존 수주 감리용역 건에 대하여 계속적 으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습니
다. 소방공사감리업의 영업범위에 따라 일반소방감리업자는 전문소방
공사감리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감리업무 수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설비의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2018.04.)

질 의 비상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설비로 정보통신공사업 자가, 비상조명등설비는 전기공사업자가 공사 예정입니다. 해당 공사건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

회 신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착공신고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조명등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 비고 1. 나. 1)에서 소방시설업자의 영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다른 업종 공사업자가 공사할수 있도록 규정이 없으며,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영업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착공신고 소방시설이 있다면 설치되는 모든 소방시설에 대하여 착공신고 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상조명등설비만 공사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비상조명등공사의 시공주체 및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2018.03.]

실 의 비상조명등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 신 목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공사에 해당되므로, 소방시설공사업자 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에서 별도로 공사할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감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설계업 주인력 겸직에 대한 질의 (2018.03.)

- 질 의 소방시설기사(전기, 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가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설계업의 주인력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 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주인력으로 겸임이 가능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보조인력 겸직에 대한 질의(2018.03.)

- 질 의 보조인력(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취득자)으로 선임된 기술자가 공사, 설계, 점검업의 보조인력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인력은 겸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체의 내진설계에 대한 질의(2018.03.)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분야만을 등록한 업체도 소방시설 중 소방내 진만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에 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의 영업범위에 해당된다면 소방내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소방시설공사의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질의(2018.02.)

질 의 감리자 지정대상에 대한 조문 중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정의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 1] 2호 <소방시설공사업> 비고(6~8번)에 개설, 이전, 정비의 용어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정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2조]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질의(2018.0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주인력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가능한지,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선임된 기술자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주된 인력으로 선임 불가, 소방시설업 기술인력과 감리업 기술인력은 중첩하여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비상조명등의 설치와 결선 등은 전기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2018.01.)

- **질 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부착)와 결선, 휴대용비상조명등의 부착은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따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 범위(전기분야)에 해당하는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질의(2018.0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1. 비고 1. 가. 기계분야 1)소화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2조] 열선공사의 공사 주체에 대한 질의(2018.01.)

질 의 동파방지를 위해 시공하는 열선공사는 소방공사업체(기계분야)에서 시 공해야 하는 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1. 비고 1.에 따라 기계분야에 속하는 설비에 해당하며 별도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기계분야에 해당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수계설비의 배관에 대하여는 동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에 해당되어 기계분야에 해당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업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3조] 소방기술자 휴가, 병가에 따른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질의 (2019.07.)

- 실 의 소방공사 진행 중인 현장의 소방기술자가 휴가 또는 병원입원 사유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 그 기간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소방 기술자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비고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소속 소방기술자가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치 된 소방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 공백이 생길 경우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된다면 업무대행자(다른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소방기술자의 공사현장 이탈시 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은 현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 훈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3조] 아파트(지하층 포함 17층, 연면적 1만제곱미터)소방기술자 배치에 대한 질의(2019.05.)

질의 아파트(지하층 포함 17층, 연면적 1만제곱미터)에 시공 시 소방기술자 배치에 대한 등급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7층으로 고급기술자 소 기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 제3조] 자진설비 시공 시 소방기술자 배치에 대한 질의(2019.05.)

방산업과 044-205-7508)

- **질 의** 자진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하는 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7층으로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3조] 소방기술자 배치 후 해외여행 시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착공신고 후 소방기술자로 배치되어, 공사기간 중 해외여행(공휴일 포함 6일)을 하였을 시 소방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
-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비고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소속 소방기술자가 책임시공 및 기술관

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 공백이 생길 경우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된다면 업무대행자(다른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3조]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발급자의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2018.06.)

- 질 의 소규모 현장의 경우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을 소방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진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별표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은 소 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로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소방 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따라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를 연면적 1천제곱미만의 소방공사현장에 배치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3조]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소방기술자 배치 등급에 대한 질의 (2018.03.)

- **질 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시 하도급업자는 하도급 받은 면적에 따라 소방기술자 배치 등급을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관계 등의 사유로 소방기술자가 담당하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오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맡은 면적을 기준으로 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3조] 한명의 소방기술자로 두 개의 아파트 현장선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2018.03.)

질 의 한명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특급, 전기분야:고급)가 A아파트현장(층수 20층, 세대수 128세대, 연면적 19,000㎡)와 B아파트현장(층수 20층, 세대수 477세대, 연면적 53,000㎡)현장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아파트현장(20층, 128세대)와 B 아파트현장(20층 477세대)의 공사현장에소방기술자(기계:특급, 전기:고급) 1명으로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방기술자는 소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두 개의 공사현장에 소방공사가 중복되는 동안은 별도로 각각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3조] 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 겸직에 대한 질의[2018.03.]

질 의 현재 토목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당 현장에서 소 방기술자 보조인력 선임하여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 2]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안전관리자와 소방기술자 보조인력의 겸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3조]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자 기술자 배치에 대한 질의(2018.02.)

질 의 연면적 25만㎡현장을 공구별로 15만㎡, 10만㎡로 나눠 각각 하도급 할 경우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등급은 고급기술자로 배치하면 되는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적용도 층,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급관계 등의 사유로 소방시설공사를 일부구간 하도급을 하였더라도 소방기술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체연면적 25만제곱미터의 특급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기존 경계구역의 감시구역 회로 증설시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 (2019.06.)

- 실 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경계구역 회로 증설이 아닌 기존 경계구역에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 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경우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 용도변경의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감지기를 추가 증설할 경우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2019.05.)

- 길 의 기존 법규에 따라 이미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흡입형 감기지 등을 설치할 경우 착공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와 소방 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해야하는 지 여부
- 회 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지기 증설 공 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증설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경계구역이 증설되지 않는다면 착공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는 소방시설을 공사·정비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업에 등록 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동파로 인해 긴급한 펌프, 배관 교체 시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 (2019.05.)

- 질 의 동파로 인해 옥내소화전 배관, 펌프가 파손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점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할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3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단서조항을 규정한 사항은 현장의안전을 우선하여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빠른 시점에 시작하여 소방시설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동파로 인하여 소방펌프를 긴급하게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할 사안이라면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전면적인 배관 교체가 아닌 배관의 부분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2019.05.)

질 의 기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 교체할 경우 착 공신고대상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 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경우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의 건축행위 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식만 변경하는 것으로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감지기 및 옥내소화전 이설작업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건물 내 화재감지기 설치 및 옥외소화전을 10m 이내의 범위로 이설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착·완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호텔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 여부에 따라 완공검사 및 공사 감리자 지정 여부가 판단되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화재감지기 설치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증설되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착공 전에 감리자를 지정하시고, 공사를 완공하신 후에 완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증설되지 않으면 착공신고, 완공검사 및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옥외소화전 이설은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개보수 시 감리자 지정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개보수 시 감리자 지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
- 회 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제1항 단서 조항에서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

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규정은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를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설의 경우에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 31조제3항에서 규정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면 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해드 추가설치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 증설되는 경우에만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착공신고 대상 여부 및 구조변경의 범위 질의(2019.04.)

질 의 거실에 헤드와 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착공신고 대상인지 여부 및 제1항에서 구조변경 이란 일부분의 변경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3항에서 "소방기계·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및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막이 설치 등으로 구획된 실에 감지기 및 헤드 추가설치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 증설되는 경우와 소방기계·전기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및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장치의 작동방식변경에 따른 교체하는 경우 착공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조변경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칸막이 설치 등 일부분의 변경도포함 된 구조 변경을 의미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증설 시 건축허가 동의,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에 대한 질의 (2019.04.)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20제곱미터이고 1층에 200제곱미터 정도를 증축할 경우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인지 여부와 해당 증축 구역에 스프 링클러헤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 여부 및 완공검사 여부 (단, 방호구역 증설은 없음)

회 신 의대상물에 해당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 이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 증설되지 않는다면 착공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는 완공검 사 의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 시 소방기술자 배치여부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소방기술자 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방기술자 현장배치는 착공신고 유무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으로 소방 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스프 링클러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진 설비 유무와 관계없이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 는 구조변경·용도변경)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에 맞 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 과 044-205-7508)

[영 제4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이설 시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 지정에 대한 질의(2019.03.)

기존 건물에서 옆쪽에 건물 2개를 신축하여, 1곳에 수신기 이설, 2곳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설 설치 시 착공신고와 공사감리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제2항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자진설비 유무와 관계없이 착공신고 대상의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및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감지기 증설 공사 시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대한 질의(2019.03.)

- **질 의** 방화구역 내 칸막이 신설에 따라 아날로그 감지기 4개 증설 시 착공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해당 공사현장이 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지기 증설 공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증설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경계구역이 증설되지 않는다면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옥외소화전설비를 철거 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에 대한 질의 [2019.03.]

질 의 특정소방대상물(4개동, 연면적 9,000㎡)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소화전설비를 3개동은 철거, 1개동은 존치 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대상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 방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공사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 의하신 옥외소화전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옥외소화전설비 철거가 법령에 맞는지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한 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수신기 교체시 감리자 지정에 대한 질의(2018.05.)

질 의 수신기 교체시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3호에 따라 노후된 수신반 교체공사는 착공신고에 해당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개정 (2017.12.12.)으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설정 및 착공신고 여부에 대한 질의 (2018.04.)

질 의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 외벽에 추가로 계단실을 설치할 경우 이것을 경계구역 변경으로 보고 연기감지기 추가 및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의 증설 시 착공신고 대상이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4조(경계구역) 계단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단실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므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경계구역 내에서 아날로그감지기(주

소형감지기) 1개 추가설치가 경계구역 증설이 아닌 감시구역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경계구역(면적별, 층별, 설비별) 증설 시에는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용 수신반 설치공사의 착공신고, 공사감리 지정에 대한 질의(2018.04.)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따라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용 수신반의 설치공사는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소방용도 외의 겸용 비상방송설비 공사 시 사업면허 에 대한 질의 (2018.1.)

- **질 의**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서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용외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무선통신보조설비 착공변경신고에 대한 질의[2018.01.]

- 고 의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공사함에 있어 건축허가 동의 및 착공신고를 소방 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도록 신고하였으나, 이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 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으로 착공변경신고가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유도등 시공 시 착공신고에 대한 질의(2018.01.)

- **질 의** 시행령 제4조의 착공신고 대상에서는 유도등설비가 없으므로, 착공신 고서에 유도등설비를 기재 안해도 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유도등을 제외한 것은 소규모 건물에만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착공신고를 제외함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공사현장이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고인 기준으로 착공신고를 해야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유도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공사 내역에 기재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착공신고 및 감리원 지정신고에 대한 질의 (2018.01.)

질 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 비를 설치할 경우 경계구역이 증설되지 않을 경우에 착공신고 및 감리원지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증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착공신고 및 감리자지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 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4조] 창고에 화재감지기 교체에 대한 질의(2018.0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소방시설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 없이 단순 감지기 교체는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꽃감지기는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어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6조] 자동화재속보설비, 방화셔터의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2019.06.)

- **질 의** 자동화재속보설비와 방화셔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소방시설별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한 사항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방화셔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6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설치된 비상방송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대한 질의(2019.05.)

- 질 의 하자보증기간이 다른 자탐(3년 보증),과 비상방송설비(2년)이 연동이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지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였더라도 각각의 설비의 하자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상기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 는바와 같이 비상방송설비는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3년으로 적용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6조]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대한 질의(2019.05.)

- 실 의 스프링클러설비 고장으로 인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신축건물인 경우만 3년 적용한다고 하는데 업체측 주장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스프링클러설비는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하자보수 기간인 3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로 신축건물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6조] 방화문 도어클로저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2018.03.)

- **질 의** 방화문 도어클로저가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문 도어클러저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하자보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9조] 방음터널 공사 감리원 배치에 대한 질의(2019.06.)

질 방음터널의 경우 소방공사감리배치 기준은 상주인지, 비상주인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 및 제11조 [별표4]에서 소방 공사감리 종류(상주, 일반)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특급 ~ 초급)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연면적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연면적 산정이 어려운 터널·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 조제1항[별표1]제3호4)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으로 연면적을 산정하여 소방공사감리 종류 및 감리 원 배치등급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9조] 상주 감리원의 반일연가, 조퇴 등에 대한 질의(2019.06.)

질 의 책임감리원이나 보조감리원이 출근 후 어느 1인이 개인사정으로 반일 연가(4시간, 오전 또는 오후)나 조퇴 또는 외출을 다녀오고자 할 때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결재를 받으면 대체감리 없이 반일연가나 조퇴 등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 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 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이상 현장을이탈하는 경우 감리현장에 지장이 없도록 대행할 다른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반일연가, 외출 등으로 1일 이내에 잠시 현장을나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결재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9조] 감리업무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2019.06.)

- 일반감리현장에 건축주가 스스로 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상주감리로 감리자 지정 신고를 한 경우 현장 이탈 등 감리업무방법을 일반감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질의하신 대상은 건축주와 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관할소방서에도 상주감리로 감리자 지정신고를 한 경우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9조 [별표3]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주공사감리 종류에 따른 업무방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9조] 상주공사감리원 반차사용에 대한 질의(2019.05.)

- 질 의 현장감리원이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업법 제16조 1일 이상 현장이 탈로 보고 업무대행자를 배치해야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서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이상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현장에 지장이 없도록 대행할 다른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반차 등으로 잠시 현장을 나가는 것은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대행자는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감리현장에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8)

[영 제9조] 일반공사감리 업무수행 시점에 대한 질의(2019.04.)

- 일반공사감리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 1회 현장방문은 착공신고와 배치일을 기준으로 주1회인지? 소방공정이 시작될 때부터 주1회 방문 후 감리일지 작성인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 "일반공사감리의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를 기록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과비고에서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시작점)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종료점)까지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8)

[영 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에 대한 질의(2019.04.)

질 의 37층 311세대 아파트의 소방공사감리의 종류는?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상주 공사감리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37층 311세대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에 대한 질의(2019.04.)

질 의 2개동 중 1개동은 일반 APT, 1개동은 주상복합아파트로 연면적 4만5천 제곱미터일 경우 상주 감리 대상인지 아니면 비상주 감리 대상인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을 사용하는 용도 등에 따라 처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에서 규정된 복합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복합건축물로 아파트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4만5천제곱미터로 적용되어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9조] 감리원의 해외출장에 따라 대체인력 선임 여부에 대한 질의 (2019.04.)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

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서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현장에 지장이 없도록 동급 이상의 자격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9조] 상주공사 감리현장에서 감리원의 현장이탈 시 제재에 대한 질의 (2019.03.)

- 질 의 상주공사 감리현장에서 감리원이 공·사적인 업무로 단시간(2~3시간) 현장 이탈시 처벌 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 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 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 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 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현장에 지장이 없도록 대행할 다른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외출 등으로 인하여 잠시 현장을 나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9조] 상주 감리원의 현장 이탈시 신고사항에 대한 질의(2019.03.)

실 의 상주 감리원이 개인사유로 인해 15일간 해외출장일 경우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현장에 배치하면 되는지 여부와 해당 사항에 대해 같은 법 규칙 제17조에 따라 7일 이내 신고 내용을 적용하여 해외출장 전, 후 변경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배치변경통보서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감리원이 현장 이탈 시 감리업무에 지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과 감리원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된 감리원을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장의 감리원을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로 업무 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9조] 여러 개의 아파트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세대수 산정에 대한 질의(2018.03.)

해당 현장의 A아파트(300세대), B아파트(250세대)가 통로로 연결된 경우 세대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상주공사감리 대상인지 여부

회 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고에서 규정하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따라서, 여러 개의 아파트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에는 여러 개의 아파트 전체를 세대수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 따르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10조]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감리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2018.07.)

질 의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펌프기동 방식이 아니여서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2항제2호제2목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종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입니다.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방식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한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방식은 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영 제10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질의(2018.07.)

044-205-7508)

실 의 소방시설등의 도급계약 체결은 16년 1월 21일 이전에 하고, 공사착공 및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를 17년 11월경에 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적용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시설 설계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10조] 용도변경에 따른 스프링클러 신설 시 감리자 지정대상 및 결과 통보에 대한 질의(2018.03.)

질 의 용도변경으로 스프링클러를 신설합니다. 그러나 수원, 펌프 양정 등은 충족하여 배관 및 헤드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지, 만약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인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설은 감리자 지정대상으로 판단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에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10조]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대상에 대한 질의(2018.02.)

- 질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설비 등이 시공될 때 비상방송설비와 유도등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에 대해서만 감리대상으로 보고 감리자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범위)에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할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시공되는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계약 및 지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8)

[영 제10조] 소방감리원 배치 기준에 대한 질의(2018.01.)

질 의 2015년 12월 21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기 신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에서 이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시설설계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11조] 교정 및 군사시설의 감리원 배치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연면적 2,000㎡이고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교정 및 군사시설의 감리원 배치 기준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에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 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층수, 설치되는 소방시설 등을 기준으 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해당 특정대상물은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으로 고급감리원 이상 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11조] 휴일 작업 시 감리원 배치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시공사 현장사정에 의해 휴일(토요일, 공휴일) 작업 시 상주감리원(책임, 보조감리원 둘 다)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 합 신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일의 근무시간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 이나, 평일의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도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 는 경우라면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에서 규정되어 있는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시면 됩니다.(소방청 소방산 업과 044-205-7508)

[영 제11조] 보조감리원 업무대행자 배치에 대한 질의(2018.03.)

- **질 일** 보조감리원의 등급은 초급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 데 현장의 보조감리원의 등급이 중급이상이라면 업무대행자를 중급이 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해야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보조감리원 업무대행자 배치는 초급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2018.02.)

- 질 의 공사현장의 연면적이 238,000㎡ 일 경우 보조감리원은 몇 명을 배치해 야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규정에 따라 연면적 238,207.26제곱미터의 보조감리원은 2명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11조]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중복 해당 시에 대한 질의(2018.03.)

- **질** 의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 현장 기준이 중급, 고급 두 기 준에 해당 될 경우 어떤 등급으로 배치해야하는 지 여부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에서는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 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현장의 기준에서 배치기준이 중 복되는 경우에는 상위 등급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 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영 제11조] 보조감리원 추가배치 산정에 대한 질의(2018.03.)

질 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200,000㎡ 이상인 경우 200,000㎡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해서 100,000㎡(연면적 100,000㎡미탈하는 경우는 100,000㎡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로 200,001㎡인 경우 1㎡미터 때문에 1명을 추가 배치해야하는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서 연면적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 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만 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는 200,001~210,000제곱미터 사이에 해당되면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규칙 제2조] 지점에 소방시설업등록 시 기술자 선임에 대한 질의(2019.03.)

- 질 의 동일 법인등록번호 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본점(부산), 지점 (서울)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지점에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소방기술자는 본점과 지점 중 어디로 등재되어야 하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제1항에서 "자본금,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조(정의)제1항제4호에서 "소방기술자란 소방시 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 시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시면 되며, 별도로 소재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본점(부산), 지점(서울) 어디에 등록하여도 관계는 없으며, 소방기술 자는 소방시설업에 등록 된 사람을 말하므로 등록 된 전문소방시설공 사업에 등록하시면 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8조] 소방공사감리업의 관계서류의 보관 기간에 대한 질의 (2018.08.)

- **질 의** 소방공사감리에 따른 감리기록부, 감리일지 등의 관계서류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소방 공사감리업의 관계서류(소방공사감리기록부,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 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소방감리서류 보관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질의(2018.03.)

질 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때"로 1차(경고)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파산하였고, 관계자 연락 두절, 사업장 소재지가 없 는 상태입니다.

이때, 1차(경고) 행정처분 후 다시 2차(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예)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 1차(경고) 행정처분 후 30일이내에 등록 기준 미달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시 2차(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3조제1항(행정처분의 적용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경고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위반행위가 시정 가능한상당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9조] 위반행위자 행정처분의 감경에 대한 질의(2018.02.)

- 질 의 법 제20조의 위반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경고처분에 감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별표1] 1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는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 며,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처분 여부는 개별기준에 따라 처 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2조] 착공신고시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에 대한 질의(2019.05.)

질 의 착공신고를 하려면 꼭 소방공사감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에서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어, 소방착공신고의 주체는 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의 주체는 관계인으로 주체가 서로 달라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2조] 착공신고 후 경매로 인해 건축주 변경에 대한 질의(2019.04.)

- 질 의 13년 10월 착공신고를 하고 14년도 건축주 연락두절로 인해 소방공사 철수요청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19년 2월 경매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 로 변경되어 착공신고를 하려하는데 착공변경신고인지 착공신고인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에서 "공사업자는 어느 하나에(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소방기술자)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상은 건축허가를 한 건으로 받아 그 대상물에 대한 시공자가 변경된 것으로 착공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2조] 칙공신고 설비를 공사하지 않은 경우 착공변경신고에 대한 질의(2019.03)

질 의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된 건식스프링클러설비를 준비작동식 스프링클 러설비로 교체하면서 관할 소방서에 유수검지장치 및 감지기회로 설치 공사와 충압펌프 교체공사를 내용으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충압펌프 는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소방서에 착공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결과보고서에만 내용을 기재하 고 확인 후 착공변경신고 없이 완공검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제2항에서 "중요한 사항(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 기술자)이 변경하였을 때에는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착공변경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6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2019.07.)

다음과 같은 현장에 1명의 감리원이 배치될 수 있는 지 여부

A현장 : 아파트 13층, 연면적 42,000㎡

B현장 : 아파트 15층, 연면적 45,000㎡

C현장 :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13층 연면적 12,000㎡ D현장 :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15층 연면적 22,000㎡ E현장 :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15층 연면적 22,000㎡

회 신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감리현장을 개수와 연면적의 총합계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단서조항의 내용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 규정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연면적 합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파트 현장 2개소,복합건축물 현장 3개소로 5개 이하의 감리현장이며 아파트를 제외한복합건축물(3개소)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이므로 한명의감리원으로 배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8)

[규칙 제16조] 감리용역 포기에 따른 감리원 철수에 대한 질의(2019.05.)

힏

질 의 감리용역 계약 후 감리자지정신고를 하였으나, 건축주 및 관계자와 연락 두절로 인해 장기간(3년) 현장이 방치되고 있을 경우 감리원 철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제1항 제1호나목에 의하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배치기준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 관련 별표3의 비고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공사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배치된 감리원 철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건축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다면 건축주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사유, 건축주의 확인을 받기위한 내용증명 등의 각종 증빙서류) 공사중단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통보 후 감리원을 공사중단 기간 동안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6조] 지하철 공구(정거장)별 감리원 배치기준 질의(2019.04.)

- 질 의 도시철도(경전철)가 1.2.3공구 (3개 구를 통과)로써 1공구: 4개 정거 장, 2공구: 4개 정거장, 3공구: 5개 정거장으로 총 13개 지하 정거장 으로서 일반소방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원 배치기준은
- 전축허가(사업승인)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건축허가를 공구별인 3건으로 받았다면,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1공구 감리원 1명, 2공구 감리원 1명, 3공구 감리원 1명)하면 되며, 건축허가를 공구별이 아닌 정거장별인 13건으로 받았다면, 정거장별로 감리원을 배치(정거장별 각 1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6조] 소방공사감리원 투입기간에 대한 질의(2019.03.)

- **질 의** 인서트나 인서트플레이트 같은 가대작업시에도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만 상주를 하여야 하는지 그 투입시점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제1항 제1호나목에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원 배치기준은 소방 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라고 규 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감리원을 배 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6조] 일반공사감리의 현장 방문에 대한 질의(2018.03.)

- 일반공사감리의 경우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 개 이하로 할 수 있다면, 1일에 2개 이상의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 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일반 공사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감리원의 배치에 대한 하루 근무 시간 및 1일 1개소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별도규정은 없지만, 1 일에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 수행은 부적합한 것으 로 판단됩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6조] 일반공사감리 주1회 해석에 대한 질의(2018.02.)

질 의 일반공사감리 주1회 방문 중 주1회란 7일 중 하루를 말하는 것인지, 첫째, 둘째주의 주당 1회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주"는 일반적인 양력달력상의 주단위로 판단하여 그 주에 1회 이상 현장 배치를 규정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7조] 소방감리원 해임방법에 대한 질의(2018.10.)

- **질 의** 퇴사에 따라 회사 측에 소방공사감리원 변경신고, 해임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해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임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소방감리원의 배치 및 소방감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배치변경통보의 의무는 소 방공사감리업자(회사)에 있습니다. 즉, 감리원(직원)의 채용 및 현장배치(신고포함)의 의무는 회사(대표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특정회사의 근로자의 해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임처리된 사항의 통보(신고)사항을 수리(처리)를 하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등의 관계이므로 민법 제660조 및 근로기준법 등을 소관하는 고용노동부(노동청) 등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9조] 제연 T.A.B 보고서 작성 주체에 대한 질의(2019.06.)

- **질 의** 제연덕트 공사를 시공하고, 제연 T.A.B 거쳐 준공할 시 해당 제연 T.A.B 보고서의 작성, 날인하는 주체는
- 호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에서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호의 서류 중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로 그 중 하

나인 별지 제4의25호 서식(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성능시험조사표)에서 제연설비의 성능시험을 별도의 업체에서 실시한 경우 성능시험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감리업자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설비의 성능시험을 별도로 하는 경우 별도로 한 업체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감리결과 통보의 주체는 감리업자로 감리업자의 확인을 받고 제출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19조]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에 대한 질의(2018.03.)

질 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감리업자가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감리원도 감리일지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는 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2호에서는 "보조감리원"이란

천 신 조성시설상사업업 시행성 발표4 미고 제2호에서는 모조심리원 이단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감리업자에 소속된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보조감리원 같은 경우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보조감리원 일지의 작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책임감리원와 같이 기재하거나 별도로 일지를 만들어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24조] 전기, 소방시설공사업을 동시보유한 업체에서의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2018.05.)

질 의 기술자가 전기공사자격증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기,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취업, 전기공사업에 선임되 어 있는 경우 소방실무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란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공사업, 설계업, 감리업)의 설계·시공·감리업무일 경우 외에 전기공사기술자는 등록된 경우에는 소방실무경력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규칙 제2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기술자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2018.01.]

- 질 의 강습 수료를 통해 사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경우 소방기술 자 경력 인정에 대한 여부(소방관련 자격증은 없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별표 4의2]의 규정에 따라 소방관련 자격의 취 득 없이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은 소방기술의 경력의 인정범위에 해당하 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8)